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9나2270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9나2270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가단208427 판결

전 문

원고,피항소인 A회사

원고승계참가인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찬원, 박신영

피고,항소인 C

변론 종결 2019. 11. 27

판결 선고 2020. 1. 8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가단208427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승계참가인과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원고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승계참가인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가.항 기재 돈을 지급하라(원고승계참가인은 이 법원에이르러 승계참가를 하였는데 별도의 청구취지를 밝히지 아니하여 이와 같이 선택한다).

2. 추완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생명보험 등을 영위하는 보험업법상 보험사업자인데,피고는 2014. 10.경 부터 원고의 보험모집인으로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4 . 10. 17. 피고와 성과급 지급약정을 체결하면서 ' 1차년도에 해촉/ 해 지 되는 경우 지급된 성과급의 100% 를 반환한다' 고 약정(이하, ' 이 사건 성과급 반환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경 피고에게 성과급 35,000,000원을 미리 지급하였는데,피고는 2015. 3. 12.

원고에게 개인사정을 이유로 해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5. 3. 30. 원고로부터 해촉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7. 7.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 사이에 '원 고의 사업과 관련된 권리 및 의무 일체'를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1. 13. 위 영업양도계약 및 보험계약 이전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2019. 10. 30.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보험설계사로 위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촉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권리 일체를 이전받은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이 사건성과 급반환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성과급 35,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30. 부터 다투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부득이하게 해 촉을 요구하게 되었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35, 000, 000원은 필요경비로 사용하라는 말을 듣고 지급받았으며 성과급 반환약정에 관하여는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여 위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해촉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볼 수 없고, 갑 제 1호증, 갑 제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35, 000, 000원을 성과급으로 지급받았고, 1년차이내에서 해 촉될 경우 지급받은 성과급의 100%를 반환하기로 한 계약서에 피고가 서명 날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 승계 참가인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광판사 김용민판사 김정현